

[별표 1] <개정 2014.12.9.>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가로형 간판	3년 이내
2. 세로형 간판	3년 이내
3. 돌출간판	3년 이내
4. 공연간판	2년 이내
5. 옥상간판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의2.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8.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9. 벽보	15일 이내
10. 전단	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년 이내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14. 선전탑	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비 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